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1
----------	-----

2022년 9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송경택 의원 외 28명
- 나. 제안일 : 2022년 9월 6일
- 다. 회부일 : 2022년 9월 7일
- 라. 상정일 :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경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 및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심의·자문으로 조정(안 제13조제1항~제4항)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관련 부서장 자료제출·출석 등 요구를 협조 요청으로 완화(안 제13조제4항)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 개최횟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안 제16조제3항)
-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안 제22조제3항, 제24조)
- NPO지원센터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안 제20조, 제21조)
- 당연직 위원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현행화(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2. 9. 9. ~ 9. 1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안 제출 기한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¹⁾에 따라 회기시작 15일인 2022.8.29.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동 개정조례안은 2022.9.6.에 제출된 바 있음.

- 본 조례는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와 NPO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 2020년 5월 대통령령(「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2020.10.5.)되었음.

※ 현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5.26. 시행)」은 폐지령안이 입법예고(2022.9.7.~9.16.)된 바 있음.

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1. 의결주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7. ~ 9. 16.)

대통령령 제 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4항에 따라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본다.

- 안 제14조제2항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서울시 조직개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²⁾(2022.8.18.)」)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현행화하려는 것인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구성) ② 당연직 위원은 <u>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u> 이 된다.	제14조(구성) ② ----- <u>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u> 으로 한다.

- 다만, 행정국은 동 조례의 개정 없이 조례상 명칭과 다른 임의명칭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금번 회기(제314회 임시회)에 제출하였는바, 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권역별 NPO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성 및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행정국의 법령 정비의 사전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

· 제안이유

-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2014년 10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11월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탁기간(3회차)이 종료함에 따라 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업무까지 확장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시민협력과·대외협력과·남북협력과를 둔다.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운영 필요
- 다양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 직접 운영 보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1) 사업목적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

2) 위탁사무 내용

- 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②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③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④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⑤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⑥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⑦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⑧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⑨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명 칭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 개관시기 : 2014년 10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시설규모 : 전용 867.4㎡
 - 1층: 열린 공간(310㎡, 약93평) ⇒ 대강당, 전시공간 등
 - 2층: 사무공간(557㎡, 약169평) ⇒ 협업공간, 회의실, 사무실, 교육장 등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2.11.15. ~ 2025.11.14.)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2년 소요예산 : 1,555백만원
 - 민간위탁금 1,555백만원(인건비 823, 운영비 403, 일반관리비 20, 사업비 309)

아. '22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안 제1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심의·자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p> <p>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u>분야별 정책의</u>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p> <p>2.~7. (생략)</p> <p>③ 시장은 위원회의 <u>자문·조정·심의</u>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u>마련해야 한다</u>.</p> <p>④ 위원회는 <u>심의·조정과</u> 정책협의를 위해, <u>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 ----- ----- <u>자문</u> ----- ----- -----.</p> <p>② ----- <u>심의·자문</u> --.</p> <p>1. ----- <u>연도별 시행계획의</u> ----- --</p> <p>2.~7. (현행과 같음)</p> <p>③ ----- <u>심의·자문의</u> -- ----- ----- <u>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p> <p>④ ----- <u>심의·자문과</u> ----- ---- <u>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동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3조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조정’을 ‘자문’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의·자문 기구로서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또한,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있고,
 - 제4항에서는 위원회가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사실조회,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협조 요청’으로 완화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u>분야별 정책</u> 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7. (생략) ④ 위원회는 <u>심의·조정</u> 과 정책협의를 위해, <u>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u>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② ----- <u>심의·자문</u> ----- 1. ----- <u>연도별 시행계획</u> 의 ----- ----- 2.~7. (현행과 같음) ④ ----- <u>심의·자문과</u> ----- ----- <u>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 동 개정안의 관련 법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과 제12조제1항에서 이와 관련된 조문에 명시하고 있는바, 책임 있는 행정 구현 및 대통령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폐지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관련 규정 준용이 적정한지, 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어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등이 약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p style="text-align: center;">「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p> <p>제6조(시민사회위원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p> <p>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p> <p>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p>

4.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의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22조제3항과 제24조는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위탁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센터의 위탁)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제22조(센터의 위탁) ③ ----- ----- <u>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24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u>위원회의 승인</u> 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센터의 운영) ----- ----- ----- - <u>시장의</u> ----- ----- -----.

○ NPO지원센터는 동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관련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센터의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역시 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교부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제4장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부터 제19조(위원회 존속기한)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동 센터와 관련된 수탁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은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시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규정한 동 개정안을 시장이 관련 법령을 살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행정국이 법령 정비 노력을 기울리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이와 관련한 조치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부적정 운영' 통보(2022.6.17.)가 있었음.

감사위원회

통보

제 목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부적정 운영

관 계 기 관 시민협력국(갈등관리협치과)

내 용

(생략)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9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개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 설치)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시정의 전문성 제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의 수립부터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 결과에 대해 협력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가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제출,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등 다른 심의·조정·자문 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표24] 타 자문·심의·조정 기구 권한 비교

구분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	성평등 위원회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사회적 경제위원회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협력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	조례 제13조 제3항	없음	없음	없음
위원회가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제출,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권한	조례 제13조 제4항	없음	없음	없음
시설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승인하는 절차	조례 제22조 제3항 및 위수탁협약서 제5조	없음	없음	없음

[표25] 조례상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과도한 권한

조례		협약서	
조항	조문	조항	조문
제13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센터의 위탁)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	①“(사)시민”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에 제출해야하며, “시”는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더욱이, 동 조례 제22조(센터의 위탁) 규정과 서울시-(사)시민 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NPO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는 수탁기관이 수립·제출한 NPO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여 각 NPO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계획의 실질적인 승인 권한이 서울시가 아닌 위원회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서울시NPO지원센터 정○○ 센터장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마을사업, 혁신사업 등 다른 분야와 다르게 NPO지원사업은 시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의 민간(수탁기관) 감시·감독 기능 강화 측면에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

심의·평가의 대상인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출신이 위원회 당연직 위원(2019년 사회혁신기획관, 임기제3급)으로 참여하고 위원 과반수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단체의 현직 임직원이어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심의·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표26] 2014 ~ 2021 시민활성화위원회 전·현직 위원 현황

계	위촉직						당연직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언론	일반시민	법률	시의원	
45	26	4	2	1	1	7	4(개방형임기제)

[표27] 2019년 시민활성화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임기)
1	학계	임○○	경희사이버대 NGO사회혁신전공주임교수	(‘18. 3.~’20. 2. 5.)
2	시민사회	장○○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18. 12. 26.~’20. 2. 5.)
3	시민사회	고○○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4	시민사회	박○○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사업지원팀장	”
5	시민사회	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
6	시민사회	이○○	(사)학교너머더큰학교 감사	”
7	법률	이○○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
8	시의원	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8. 10. 24.~’20. 6. 30.)
9	시의원	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8. 11. 27.~’20. 6. 30.)
10	공무원	정○○	서울혁신기획관 (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14~`19)	당연직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구성으로 인해 ‘방만한 권역별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대관료 부적정 사용’, ‘편법 공모(보조금)사업’ 등 잘못된 사업(계획)이 위원회의 승인하에 추진되었으며, 서울시NPO지원센터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시의회 지적(2018 행감 등)과 언론 비판 기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승인에 따른 사업 추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운영을 즉시 시정하지 않는 등 위원회라는 책임 없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를 악용하여 NPO지원센터 운영을 방만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시민협력국장(갈등관리협치과장)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서울시 유사 타 위원회의 권한과 비교하여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조례 개정 등 조치 하시고,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안 제16조제3항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 개최횟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영)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제16조(운영) ③ ----- ----- - 2회 -----, -- ----- -----.

- 최근 5년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최 일수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총 16회에 불과한바, 안 제16조제3항과 같이 정기회를 연 2회로 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유연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개최 현황(최근5년) 〉

연도	차수 (날짜)	상정안건	심의결과	
2017	1차 (4.5)	(심의) 서울시NPO지원센터 1기(3년) 사업성과 보고 및 2기 추진방향 심의	원안승인	
		(심의) 2017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실행 계획 심의	원안승인	
	2차 (7.6)	(참석위원) 이○○, 박○○, 신○○, 임○○, 박○○, 임○○, 신○○, 장○○, 김○○, 전○○	(자문)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
		(심의)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원안승인	
		(참석위원) 강○○, 박○○, 임○○, 박○○, 문○○, 임○○, 신○○, 방○○		
	3차 (10.18)	(심의) 2017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심의	원안승인	
(보고)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보고		-		
2018	1차 (1.17)	(심의)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7년 사업 성과 및 2018 사업계획 심의	원안승인	
		(보고)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보고	-	
		(자문)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재구성 기준 논의	-	
	2차 (5.16)	(참석위원) 이○○, 박○○, 신○○, 임○○, 임○○, 박○○, 조○○, 김○○, 전○○	(보고)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 현황 보고	-
		(참석위원) 산○○, 장○○, 홍○○, 고○○, 박○○, 정○○, 최○○, 이○○, 강○○, 이○○, 임○○, 전○○		
	3차 (6.26)	(심의) 동북권 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계획 심의	원안승인	
(심의) 서울시 NPO지원센터 규정 개정 심의		원안승인		

연도	차수 (날짜)	상정안건	심의결과
2019	4차 (10.31)	(참석위원) 임○○, 신○○, 고○○, 박○○, 정○○, 최○○, 이○○, 이○○	
		(보고)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현황 보고	-
		(심의)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심의	조건부승인
		(참석위원) 임○○, 장○○, 방○○, 홍○○, 박○○, 정○○, 최○○, 이○○, 강○○, 김○○	
	1차 (1.24)	(심의)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8 사업평가 및 2019 사업계획 심의	원안승인
		(심의) 동북권 NPO지원센터 2018 사업평가 및 2019 사업계획 심의	원안승인
		(심의)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심의	원안승인
		(참석위원) 임○○, 장○○, 고○○, 최○○, 이○○, 이○○, 강○○, 이○○	
	2차 (5.14)	(심의) 서울시 NPO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심의	원안승인
		(보고)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 사업진행 현황 보고	-
(참석위원) 임○○, 장○○, 고○○, 박○○, 최○○, 이○○, 이○○, 정○○			
3차 (7.4)	(심의)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심의	원안승인	
(참석위원) 장○○, 고○○, 박○○, 최○○, 이○○, 이○○, 정○○			
연도	차수 (날짜)	상정안건	심의결과
2020	1차 (1.17)	(보고) NPO지원사업 관련 계획,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계획 등	-
		(심의) 서울시 NPO지원센터 2020 사업계획	원안승인
		(심의) 동북권 NPO지원센터 2020 사업계획	원안승인
		(참석위원) 임○○, 장○○, 고○○, 박○○, 최○○, 이○○, 오○○	
	2차 (5.11)	(심의) 동남권 NPO지원센터 2020 사업계획	원안승인
		(심의)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원안승인
		(참석위원) 임○○, 고○○, 박○○, 최○○, 이○○, 전○○, 조○○, 정○○, 권○○, 노○○, 양○○, 임○○	
	3차 (7.4)	(보고) 시민공익활동촉진조례 전부개정 추진계획	-
		(심의)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원안승인
		(심의) 서울시 NPO지원센터 및 권역 NPO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조건부승인
		(참석위원) 임○○, 고○○, 박○○, 최○○, 이○○, 전○○, 조○○, 정○○, 노○○, 양○○, 임○○, 오○○	
	4차 (11.4)	(보고) 조례에 따른 보고와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
		(보고)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
		(보고) NPO입주협업공간 / 서남권 NPO지원센터 추진경과	-
		(보고) NPO지원 뉴딜일자리 추진경과	-
		(참석위원) 임○○, 박○○, 최○○, 전○○, 조○○, 정○○, 노○○, 양○○, 오○○	
2021	1차 (2.5)	(보고)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보고	-
		(보고) 서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보고	-
		(보고) NPO입주협업공간 조성 추진 경과보고	-
		(심의) 서울시 NPO지원센터 성과보고 및 2021 사업계획	원안승인
		(심의) 동북권 NPO지원센터 성과보고 및 2021 사업계획	원안승인

연도	차수 (날짜)	상정안건	심의결과
		(심의) 동남권 NPO지원센터 성과보고 및 2021 사업계획	원안승인
		(참석위원) 임00, 박00, 최00, 이00, 조00, 정00, 이00, 부00, 락00, 현00, 이00, 유00, 신00, 채00, 오00	
	2차 (4.16)	(심의) 서남권 NPO지원센터 사업계획	원안승인
		(심의) NPO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대관운영규정 개정	원안승인
		(보고) NPO 입주협업공간 조성 추진 현황	-
		(보고) 시민사회활성화 공익활동증진 기본계획 토론기획(안)	-
		(보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방안	-
		(보고) 의원면직에 따른 위원 해촉	-
		(참석위원) 임00, 고00, 박00, 최00, 이00, 조00, 정00, 양00, 락00, 현00, 신00, 이00	

○ 안 제20조와 제21조는 ‘NPO지원센터’의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동 센터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서울특별시 <u>NPO지원센터</u> 등	제5장 ----- <u>공익활동지원센터</u>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u> 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 ----- <u>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u> 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1조(기능) <u>센터</u> 는 ----- -----.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 (현행과 같음)
2.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u> 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2. <u>시민공익활동의</u> ----- -----
3.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u> 관련되는 <u>교육·훈련·국내외 연수</u> 등 인재육성	3. <u>시민공익활동과</u> ----- --- <u>교육·훈련</u> 등 -----
4.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u> 관한 상담·컨설팅	4. <u>시민공익활동에</u> ----- -----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현행과 같음)
6.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u> 관한	

현행	개정안
<u>조사·연구</u> 7.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u>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u>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u> 과 운영 9. 그 밖에 <u>공익활동</u>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u>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u> 7. <u>시민공익활동</u> ----- ----- 8. <u>권역별 시민공익활동</u> 관련 특화 사업 9. ---- <u>시민공익활동</u> ----- ----- -----

○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고, 권역별 NPO지원센터인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8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2020년)’,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2021년)’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

※ 현재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위탁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서남권 NPO지원센터’는 11월 종료 예정임.

<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현황 >

◆ 광역 센터 1개, 권역별 센터 3개

구분	광역(1개소)	권역(3개소)		
	서울시NPO지원센터	동북권NPO지원센터	동남권NPO지원센터	서남권NPO지원센터
수탁법인	(사) 시민	(사)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사) 커뮤니티허브공감	(사) 구로공익단체협의회
수탁기간	'19.11.15~'22.11.14.	'18.6.15.~'22.6.14.	'20.3.5.~'23.3.4.	'21.3.1.~'24.2.28.
인력(정원)	17명	5명	5명	5명
'22년예산	1,555백만원	297백만원	450백만원	432백만원
종료현황	'22.11월 신규 위탁 추진	'22.6월 종료 완료	'23.3월 종료 예정	'22.11월 종료 예정*

※ 서남권 센터는 '24. 2월 종료 예정이나 수탁기관에서 조기 협약해지 협의 요청('22. 3)

- 본 조례개정안은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 간 업무 중복성 해소를 위해 권역별 센터를 종료하며 광역과 권역별 기능을 통합하며, 공공예산 지원을 최소화하여 자체 사업발굴·경영 개선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법률·노무·홍보·네트워크)을 연계하여 시민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센터의 사무 내용 중 안 제21조제2호에서 제9호까지 ‘시민사회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바,
 -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일체의 활동 지원 내용을 일방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지난 9년간 센터가 지속해서 운영되어오며 축적된 연구와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국은 사무 내용의 종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 실적 〉

○ 운영 현황

< (사) 시민 운영 현황 >

- ▶ 설립목적 :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사업
- ▶ 법인 설립('13.2.26.) / 서울시 NPO지원센터 수탁('13.11월)

구 분	1회차(3년)	2회차(3년)	3회차(3년)
수탁기간	'13.11.15.~'16.11.14.	'16.11.15.~'19.11.14.	'19.11.15.~'22.11.14.
수탁법인	(사) 시민	(사) 시민	(사) 시민
선정방법	공 모	재계약	재위탁(공모)

○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성과 평가 결과 및 주요 추진 실적

- 2016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2점으로 재계약 자격 충족하여 3년 재계약
- 2019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5점으로 재위탁 자격 충족하여 3년 재위탁
- 2021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1.86점

평가범주	사업 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시민 만족도	합계
배점	24	15	38	8	15	100
득점	16.02	11.8	33.5	7	13.54	81.86

○ 주요 사업성과

- ('13~'16) NPO조직운영 역량강화, 미트쉐어, 활동가 역량강화, 공간지원 등
- ('16~'19) NPO조직변화 지원, 국제컨퍼런스, 파트너페어, 정책연구 등
- ('19~'21) 조직변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환경조성,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원연계 및 정보확산 등

○ 한편, 안 제21조제8호는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사업'을 센터의 사무 내용으로 추가하고 있는바,

- 현재 권역별 NPO지원센터로써 운영되고 있는 '동남권NPO지원센터(2023년 3월 종료 예정)'와 사무 내용이 중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요소와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현황 〉

1) 사업목적

- 서울 동남권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위탁사무 내용

- ①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②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컨설팅
- ③ 동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④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⑤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⑦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설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 개관시기 : 2020년 3월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5, 4층(가락동)
- 시설규모 : 386.55㎡(전용 약250㎡)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행정국은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의회를 경시하고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행정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심의·조정”을 “심의·자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심의·조정”을 “심의·자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분야별 정책의”를 “연도별 시행계획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자문·조정·심의의”를 “심의·자문의”로 하며, “마련해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심의·조정과”를 “심의·자문과”로 하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를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4회”를 “2회”로 한다.

제5장 제목 중 “NPO지원센터 등”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 중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를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각 센터는”을 “센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4.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7.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9.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제3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위원회의”를 “시장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센터는 협약 만료 시까지 그 명칭은 유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10. (생략)</p> <p>11. <u>자치구의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u></p> <p>12. (생략)</p> <p>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p> <p>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p> <p>1. <u>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u></p> <p>2.~7. (생략)</p> <p>③ 시장은 위원회의 <u>자문·조정·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u></p>	<p>제7조(기본계획 수립) ② (현행과 같음)</p> <p>1.~10.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1.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p> <p>① ----- -----<u>자문</u>----- ----- ----- -----.</p> <p>② ----- -- <u>심의·자문</u>--.</p> <p>1. ----- <u>연도별 시행계획의</u> ----- -----</p> <p>2.~7. (현행과 같음)</p> <p>③ -----<u>심의·자문</u> <u>의</u> ----- ----- ----- ---- <u>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④ 위원회는 <u>심의·조정과</u> 정책협의를 위해, <u>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u>할 수 있다.</p>	<p>④ -----<u>심의·자문과</u>----- ----- <u>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14조(구성) ② <u>당연직 위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u></p>	<p>제14조(구성) ② ----- <u>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u></p>
<p>제16조(운영)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u>4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p>	<p>제16조(운영) ③ ----- ----- <u>2회</u> -----, ----- -----.</p>
<p>제5장 서울특별시 <u>NPO지원센터</u> 등</p>	<p>제5장 ----- <u>공익활동지원센터</u></p>
<p>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u>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p>	<p>제20조(설치) ----- ----- <u>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u>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21조(기능) <u>각 센터는</u>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u>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u> 	<p>제21조(기능) <u>센터는</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시민공익활동의</u> ----- ----- 3. <u>시민공익활동과</u> -----

현행	개정안
<p>련되는 <u>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u> 인재육성</p> <p>4.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u> 관한 상담·컨설팅</p> <p>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p> <p>6.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u> 관한 조사·연구</p> <p>7.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u>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p> <p>8. <u>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u>과 운영</p> <p>9. 그 밖에 <u>공익활동 및 시민사회</u>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p>제22조(센터의 위탁)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24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u>위원회의 승인</u>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u>교육·훈련 등</u> -----</p> <p>-----</p> <p>4. <u>시민공익활동에</u> -----</p> <p>-----</p> <p>5. (현행과 같음)</p> <p>6. <u>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u></p> <p>7. <u>시민공익활동</u> -----</p> <p>-----</p> <p>8. <u>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u></p> <p>9. ----- <u>시민공익활동</u> -----</p> <p>-----</p> <p>제22조(센터의 위탁) ③ -----</p> <p>----- <u>시장의 승인</u>을 받아야 한다.</p> <p>제24조(센터의 운영) -----</p> <p>-----</p> <p>----- <u>시장의</u> -----</p> <p>-----</p> <p>-----.</p>